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이원택·송옥주·어기구

임호선 • 문대림 • 안호영

윤준병 • 한병도 • 문금주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의 발표자료(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농가의 생산비는 크게 폭등한 데 반하여 농가의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있기 때문임.

이렇듯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도 부재한 상황으로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

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40조의2 신설, 제28조).

법률 제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

제28조 중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2(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 위원회를 둔다.
 - 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농가의 소득안정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7명 이내
 -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5명 이내
 -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 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 유)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2)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 책 및 재정 지원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 회사법인의 육성) -----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 상과 농산물의 출하 유통 · 가 공 · 판매 · 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 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 -----법인으로서 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야 하다.

<신 설>

-----.

제40조의2(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 회 설치·운영) ① 농가의 소 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 다.

- 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농가의 소득안정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 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촉하는 사람
 - <u>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7명</u> 이내

 -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